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예천지점 운영 매뉴얼

202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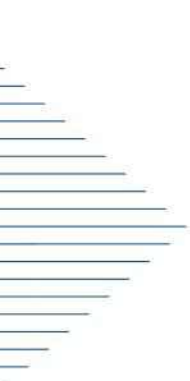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목 차 ■

01. 사업의 이해	01
02. 사업운영	11
03. 참여근로자 관리	21
0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4
05. 기타 조치사항	28



01

사업의 이해



1. 목 적

-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이 단기·시간제 근로 등을 통해 경제 활동에 재진입하면서 돌봄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기업(또는 공공기관)의 출산·육아휴직, 긴급 업무 공백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맞춤형 인력채용을 통해 해소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유연한 근무 조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
-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3. 일자리 편의점 정의

<일자리 편의점 정의>

-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은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이 단기 근로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거나 재취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플랫폼이다. 기업(또는 공공기관)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긴급 업무공백 등을 손쉽게 채워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 근로자는 유연한 근무 조건과 맞춤형 지원(돌봄 연계,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한다.
- 이를 통해, 여성에게는 단기라도 안정적인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입장에서는 필요 시점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생형 고용 모델을 지향한다.

4. 일자리 편의점 유형

① (유형 I) 워라밸케어 일자리

1. 특징

- 자녀 육아 및 살림 경험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의 일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며 워라밸을 지원하는 일자리
- 자녀 육아 및 살림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경력유지 및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업무 내용(예시)

- 아침 돌봄·등교 동행, 학원버스 운전기사(돌봄시설, 학원 등)
- 맞벌이 부부 정리수납(정리수납 업체 등)
- 방과 후 놀이지도사 등 방과 후 강사 근무(강사과견업체 등)

3. 주요 대상

- 자녀 육아 및 살림 경험을 살려 가족 지원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
- 돌봄 및 교육 관련 업종의 단기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 및 기관

4. 구성 방식

- 지원 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인건비의 50%(지급한도 월 105만 원)

5. 효과

- 육아 경험을 활용한 재취업 기회 제공 및 경력단절 해소
-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가족 지원 강화, 이를 통한 경북 지역 내 돌봄 및 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와 지역 경제·복지 증진

② (유형 II) 복지케어 일자리

1. 특징

- 경북 지역의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돌봄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의 인력 수요를 충족
- 여성들이 보유한 육아 및 살림 경험을 돌봄 서비스에 접목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업무 내용(예시)

- 요양원 및 노인복지센터에서의 기본 돌봄 보조 업무
- 장애인 활동보조(일상 지원, 이동 보조, 정서 지원 등)
- 방문 돌봄 및 시설 내 생활 지원 등 복지 서비스 관련 업무

3. 주요 대상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단기 인력 채용을 통해 서비스 품질 높이하고자 하는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4. 구성 방식

- 지원 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인건비의 50%(지급한도 월 105만 원)

5. 효과

- 경북 지역 내 돌봄 및 복지 서비스 활성화로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 증진
- 고령화 및 장애인 지원 인프라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③ (유형 III) 경력케어 일자리

1. 특징

- 행정·회계·CAD 등 전문 기술 및 지식을 요하는 사무직 수요가 있는 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
- 여성들이 보유한 전문 능력과 업무 경험을 활용, 재취업 및 경력 회복 기회 제공

2. 업무 내용(예시)

- 중소기업 사무행정(문서 관리 및 자료 정리 등)
- 회계 및 재무 관리 지원(세무 프로그램 활용, 각종 재무자료 분석 등)
- CAD 도면 작성 및 간단한 설계 지원(설계 프로그램 사용)
- 그 외 기업 내 행정 지원, 데이터 입력 등 전문 기술·사무업무 전반

3. 주요 대상

-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여성
- 경력 회복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커리어 발전을 희망하는 여성
- 유연한 전문인력 보충을 원하는 경북 지역 내 중소기업 등

4. 구성 방식

- 지원 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인건비의 50%(지급한도 월 105만 원)

5. 효과

- 여성의 전문 분야 재취업 기회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④ (유형 IV) 서비스케어 일자리

1. 특징

- 카페, 식당,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 및 파트타임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
- 서비스 업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탄력 근무, 파트타임, 단기 프로젝트 등)에 빠르게 대응하여 인력을 공급

2. 업무 내용(예시)

- 카페·식당 등에서의 단기 알바(음료 제조, 서빙, 고객 응대 등)
- 마트 및 편의점에서의 진열, 계산 및 고객 서비스 업무
- 소매점, 배달 보조 등 기타 서비스 현장에서의 지원 업무

3. 주요 대상

- 단기 근무나 파트타임 형태로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며 일하고자 하는 여성
- 경북 지역 내 카페, 식당,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근로 형태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4. 구성 방식

- 지원 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인건비의 50%(지급한도 월 105만 원)

5. 효과

- 서비스 업종에서의 인력 수급 원활화 및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 경북 지역 서비스 업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및 복지 증진

⑤ (유형 V) 시즌케어 일자리

1. 특징

- 수확기, 지역 축제 등 계절적 특성이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일자리로, 경북 지역의 계절 산업 및 행사를 지원
- 여성들이 단기 근무를 통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 제공
-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계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보충 역할 수행

2. 업무 내용(예시)

- 농업 보조 : 수확, 포장, 농작물 관리 등 계절 농업 관련 지원 업무
- 지역축제/행사 지원: 행사 설치, 안내, 정리, 운영 보조 등 이벤트 관련 업무
- 관광 안내,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기타 계절 특수업종의 단기 지원 업무

3. 주요 대상

- 농업·축제·행사 등 현장의 변동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여성
-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농업, 축제, 행사 등 관련 업종 및 지역 기관

4. 구성 방식

- 지원 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인건비의 50%(지급한도 월 105만 원)

5. 효과

- 여성의 단기 재취업 기회 확대 및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
- 계절적 수요에 맞춘 신속한 인력 보충으로 지역 산업 효율성 증대
- 경북 지역 내 계절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복지 증진

⑥ (유형 VI) 공공케어 일자리

1. 특징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력공백을 보충하고, 공익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공익 분야 근무 경험을 제공하여, 향후 여성들이 사회복지, 행정 등 공공영역으로 재취업하거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2. 업무 내용(예시)

- 공공기관 등의 사업 기획·운영 보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무실 운영 지원(파일 관리, 문서 작성 등)
- 사회적경제 조직 업무 협력: 제품 포장·출하 준비, 온라인 판매·마케팅 지원, 지역 커뮤니티 행사 보조 등

3. 주요 대상

- 공공·공익분야에서 안정적인 근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여성
-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중 단기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관·단체

4. 구성 방식

- 지원 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인건비의 50%(지급한도 월 105만 원)

5. 효과

- 여성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공·공익분야 근무 경험 제공
- 예산 부족 등으로 상시 채용이 어려운 공공·공익부문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공급

⑦ (유형 VII) 출산육아휴직 대체케어 일자리

1. 주요 대상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3개월 이내로 고용한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상
- 기업(관)에서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근로자(대체인력) 입장에서는 단기간이지만 경력공백을 최소화하며 실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

2. 업무 내용(예시)

-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업무 또는 보조적 직무 대체 등

3. 주요 대상

-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여성 인력을 3개월 이내 단기간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
- 휴직자 공백 동안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취업 여성 인력을 활용하려는 조직

4. 구성 방식

- 지원 기간 : 3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인건비 100%(지급한도 월 210만 원)

5. 효과

- 기업(관)은 출산·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워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력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근로자는 단기간이지만 육아휴직 대체 근무를 통해 경력 공백을 줄이고, 추후 상시 채용으로 연계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음

⑧ (유형 VIII) 수요맞춤형 일자리

1. 특징

-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 경북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고, 지역별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진행 방식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유형 개발(시군)→경북도 검토·승인→지역별 사업추진(시군)
- 지역 내 핵심 산업 및 인력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3. 효과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5. 일자리 편의점 지정 운영

- (지정 운영 절차)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지점은 시·군에서 지정 추천* 후 경상북도 최종 승인 및 지정
 - *공모 또는 자율 추천 가능
- (지정대상)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지역 일자리지원기관
- 지정원칙
 - (운영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등
 - (지정절차) 시·군에서 기관 추천 → 도에서 승인 → 협약 체결
 - (운영기관 역할) 홍보·상담, 구직·구인 매칭, 지원금 신청·정산, 사후 모니터링
 - 선정된 운영기관은 본 사업에 필요한 구인·구직 발굴, 상담 및 매칭, 참여자 관리,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사업 성과보고 등 전반적인 운영을 전담함
 - 사업 진행 중 수시 모니터링, 부정수급 방지 점검 및 결과보고 등의 책임을 가짐
 - (지자체 역할) 사업 예산 확보·배분, 운영기관 감독, 제도 개선 등
 - (운영기관 표시)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00지점**(예,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예천지점)
- (업무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주체
 - 경북도, 해당 시·군, 수행기관(운영기관), 그리고 필요 시 기타 참여기관(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함께 4자 혹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서식1] 협약서)
 - 협약 시기
 - 수행기관(운영기관) 선정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에 협약을 맺어 역할·책임·사업기간·예산사용 지침 등을 공식화함
 - 협약 기간
 -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다만 시군의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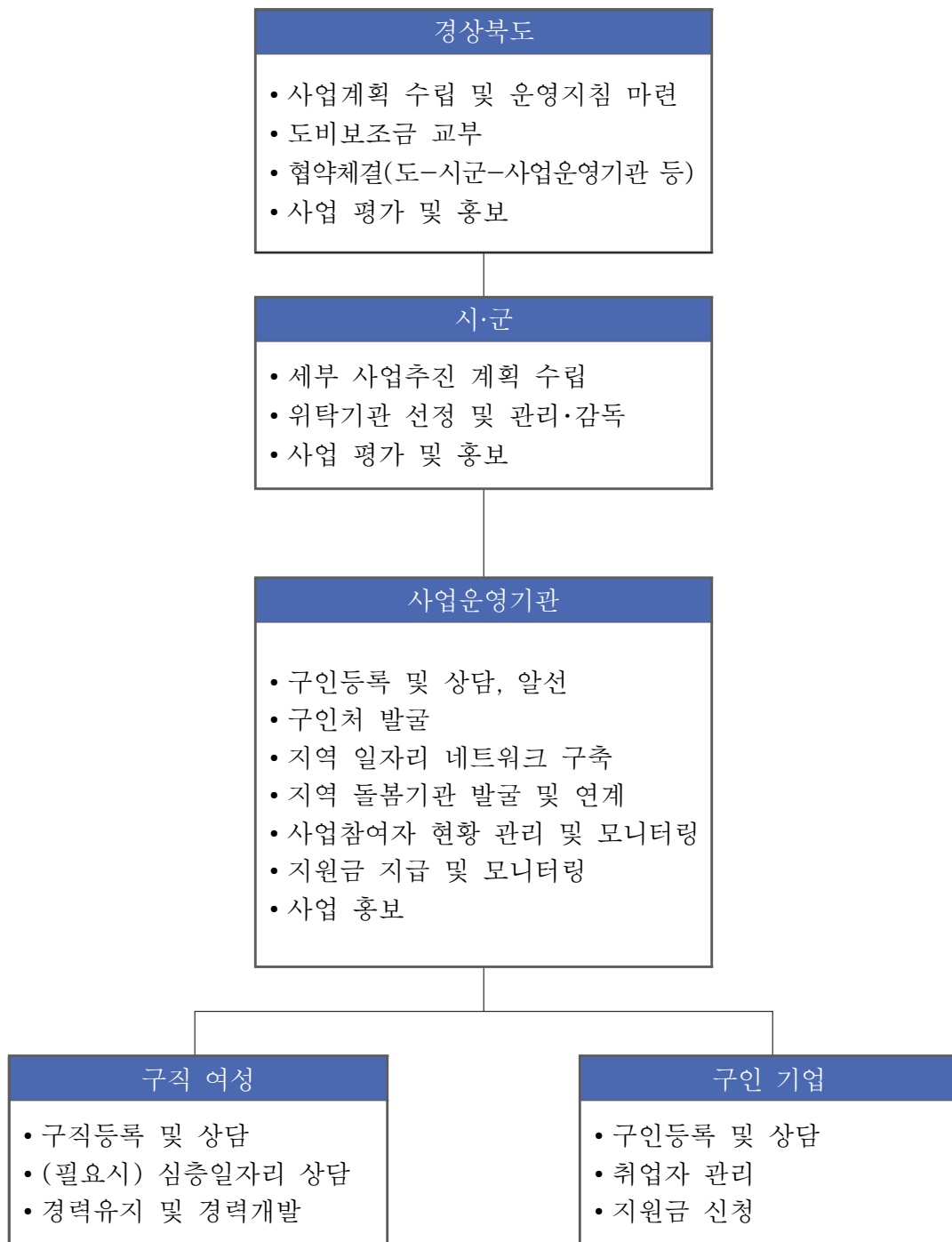
－ (운영기관의 사업전담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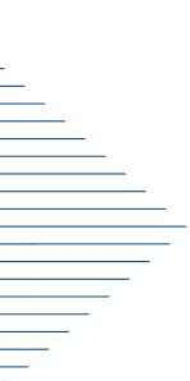
- 1) (종사자 배치 원칙) 일자리 편의점 운영기관은 전담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수급 등 현장여건에 따라 기존 운영기관의 인력 활용 가능
- 2) (종사자 자격 조건) 아래 제시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채용절차) 운영기관의 채용절차와 동일
- 4) (인건비) 사업 운영기관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2025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함
*1년 이상 채용 시 퇴직적립금 적립해야 함

6. 해석 권한

- 동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있음

7. 추진체계





02

사업운영



2

사업운영

1. 업무흐름도

	단계	내용	담당자
①	모집 준비	· 시군별 세부사업 지침 및 사업계획 마련 · 모집공고 등록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일자리 편의점 관련 정보를 공지하는 과정	· 예천군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②	구인-구직자 매칭	· 참여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각종 서류 접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③	약정 체결	· 지원 약정서 체결 운영기관-참여기업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참여기업
④	참여자 관리	· 근로조건의 준수 · 참여자 현황 관리 중도탈락자 등 참여자 현황 관리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참여기업
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참여기업
⑥	참여자 후속지원	· 신규 취업 등 후속지원 사업참여 종료(예정)자 중 신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과정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⑦	일자리사업 평가 준비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참여기업

2. 참여자격

① 구직자

1)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예천군 거주자로 미성년 자녀를 둔 취업 희망 (경력단절)여성

2) 제외대상:

- ① 약정 당시, 예천군 이외 거주자
- ② 약정 당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 ③ 참여기업 대표자 본인,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당연가입 체류자격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하며, 체류자격 증빙을 필수로 확인함

⑤ (약정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ex.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인턴 채용지원 사업, 도내 청년인건비지원사업 등

⑥ 사업자등록을 한 자(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 예외)

⑦ 지원개시일 이전 1개월 이내 해당기업에서 취직한 사실이 있는 자 (최초 협약 시 해당)

② 구인기업

1) 참여자격은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예천군 내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포함)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업무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 예천군 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천군 내 소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 예천군 내 주소지를 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2) 제외대상:

- ① 참여기업 소재지가 예천군 이외 지역인 기업
- ②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③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④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 ⑤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⑥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⑦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⑧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지원내용

① 일자리 편의점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액
(유형 I) 위라벨케어 일자리	자녀 육아 및 살림 경험을 살려 가족 지원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II) 복지케어 일자리	- 돌봄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단기 인력 채용을 통해 서비스 품질 높이하고자 하는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III) 경력케어 일자리	-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여성 - 경력 회복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커리어 발전을 희망하는 여성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IV) 서비스케어 일자리	카페, 식당,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근로 형태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V) 시즌케어 일자리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 보충이 필요한 농업, 축제, 행사 등 관련 업종 및 지역 기관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VI) 공공케어 일자리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	인건비 50% (지급한도 월 105만 원)
(유형 VII) 출산육아휴직 대체케어 일자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3개월 이내로 고용한 중소기업 및 기관 대상	3개월 이내	인건비 100% (지급한도 월 210만 원)
(유형 VIII) 수요맞춤형 일자리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별 수요 맞춤형 일자리	—	—

*인건비라 함은 근로계약 시 월정액과 주휴수당,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참여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임금(세전)을 말함

**지원액 : 천단위 절사

② 대상자 선정 및 선정한도

1) 대상자 선정

- (구직자) 미성년 자녀를 둔 취업희망 (경력단절)여성으로 하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자리를 연계해야 함

가. 우선순위

- ① 1순위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여성
- ② 2순위 : 중학생 자녀를 둔 여성
- ③ 3순위 : 고등학교 자녀를 둔 여성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를 둔 여성을 우선으로 함

2) 선정한도

- (기업) 제한 없음
- (근로자) 근로계약이 정상 종료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중복·반복 신청 가능함.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중복·반복 참여가 제한됨

* 정당한 사유 :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건강문제, 가족 돌봄 등

4. 지원절차

① 참여신청 접수

1) 구직자

- (구직자)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참가신청서([서식 3])와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를 작성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제출해야 함
- 구직자 제출 서류 목록

- ① [서식 3] 참가신청서 1부
- ② [서식 5]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미성년 자녀유무 확인용)

2) 구인기업

- (구인기업) 참가를 희망하는 구인기업은 참가신청서([서식 2])와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를 작성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제출해야 함
- 구인기업 제출 서류 목록

- ① [서식 2] 참가신청서 1부
- ② [서식 4]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④ 사업자 전체 가입자 고용정보 현황 1부
- * 고용정보현황 사이트 : www.4insure.or.kr
- * 신청일 기준 구비서류 제출

3) (운영기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업과 구직자의 기초 정보(기업 현황, 구직자 이력 등)를 검토하여 다음 단계(자격심사)로 진행할지 판단함

② 대상자 자격심사

- (운영기관) 서류를 토대로 구인기업 및 구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함
(예: 기업 업종, 규모, 구직자의 거주지·경력·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청 또는 참여 불가 안내를 해야 함

③ 구직상담 및 알선

- (운영기관) 자격심사를 통과한 구직자에 대해, 경력·적성·희망 직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업 상담을 실시함
- 상담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의 구인 정보(근무조건, 임금 수준 등)를 상세히 안내해 구직자의 의사를 확인함

- (자녀 돌봄연계) 돌봄시설 활용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지역 내 돌봄기관 정보 및 신청 방법 등을 제공해야 함

④ 매칭 및 후속 안내

- (운영기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과 구직자의 희망 조건을 검토해 매칭을 진행함
- 매칭이 완료되면 이후 절차(약정 체결, 근로계약, 지원금 신청 등)에 대해 구직자·기업 양측에 안내함

⑤ 참여기업의 구직자 직접선발

- 1) (직접선발 요건) 참여기업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승인을 거친 경우 근로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음

< 직접선발 요건 >	
① 구인신청 후 10일 이내 취업알선을 받지 못한 경우	
② 구인신청 후 10일 이내 취업알선을 받았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2) (직접선발 신청)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한 참여기업은 「직접선발 승인 신청서([서식 13])」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3) (자격심사 및 안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참여기업의 직접선발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함. 참여기업이 선발절차를 위반한 경우(①직접선발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승인 허가 전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음

⑥ 근로계약 체결

- 1) (근로조건 협의) 매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구인기업과 구직자는 임금·근로시간·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도록 안내함
- 2) (계약서 작성) 협의를 완료되면 근로계약서([서식 6])를 작성·서명하여 근로관계를 공식화함

- 3) (운영기관 검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금 수준, 계약 기간 등이 사업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요청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4) (사업참여근로자의 보험적용) 사업참여기업의 사업주는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함
*단, 가입의무 제외 대상은 예외로 함

7] 업무약정 체결 및 해지

- 1) (업무약정)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구직자 및 구인기업 매칭이 성사된 기업, 근로자와 지원 약정서 「[서식 7]」 을 체결함
- 2) (약정 시 조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3) (부정수급 방지 노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참여기업·참여근로자가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가. “부정수급”이라함은 참여기업 또는 참여근로자가 지원금을 허위로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함

나.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벌칙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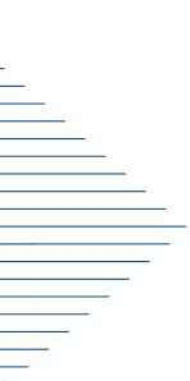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4) (협약의 해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가. 참여기업이 본 사업 지침 및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나.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예: ① 참여기업의 폐업, 중도휴업, 법정관리(회

생절차) 개시 등으로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②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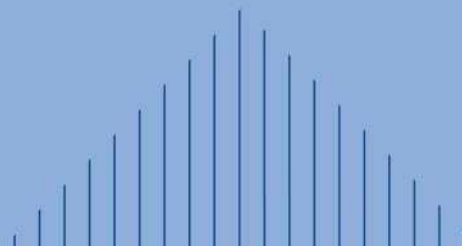
다. 그 밖에 부정수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5) (해지 절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약정 해지 사유가 확인된 즉시, 해지 대상인 기업(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소명 기한 내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해지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약정 해지가 결정됨
- 6)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협약(약정)이 해지된 시점부터 지원금 지급을 즉시 중단함.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부정수급이 확인되거나 해지 사유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부분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환수 절차 및 기준은 본 지침 「부정수급 방지·제재 규정」에 따르며,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준함



03

참여근로자 관리



① 사업참여근로자의 급여지급

- 참여기업은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예천지점 사업의 지원금(후불제 성격)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업무상 재해, 질병, 중도퇴사·장기출장·근무능력 저하 등)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근로계약 변경사항 발생 즉시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② 근무 실태 점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참여근로자가 실제 근무 환경(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에서 근로기준법과 사업 지침이 준수되는지 전화, 현장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모니터링해야 함(예, 월 1회이상)
- 이상 징후 발견 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즉시 시정 조치 및 운영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함

③ 돌봄 시설 활용 모니터링

-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참여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용 만족도, 시간 조정 등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대안 마련(다른 기관 소개, 추가 지원 연계 등)

④ 업무상 재해

-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지원 결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

*해당 참여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산재보험 급여 수령 시

지원금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함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됨

⑤ 기타 근로조건

○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무상황 관리(출근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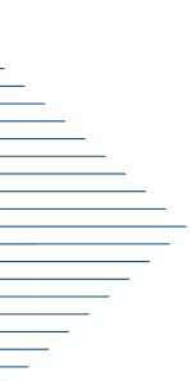
- 사업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 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근무장소

- 사업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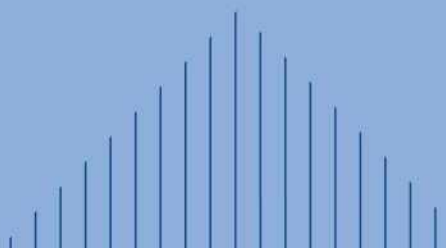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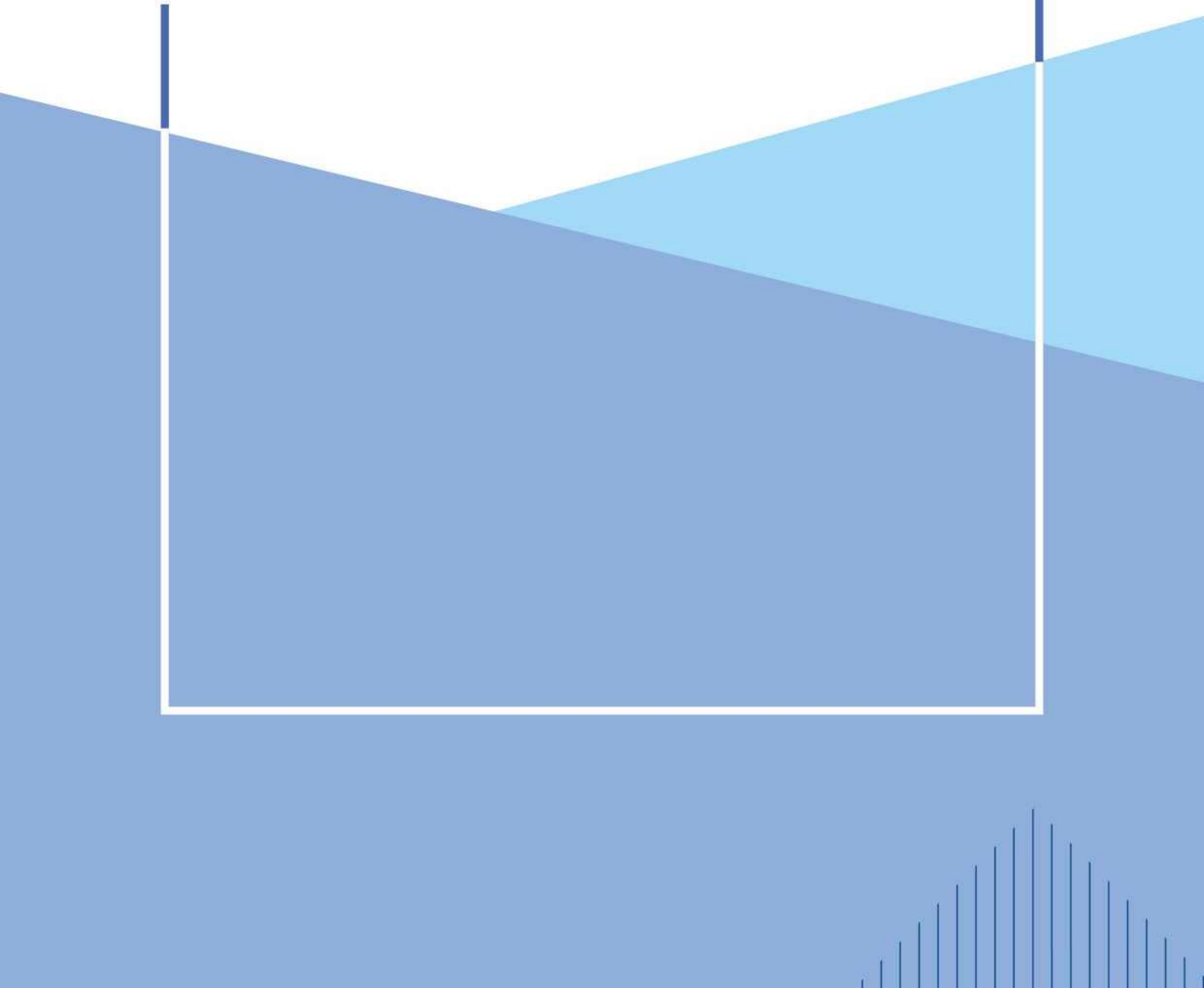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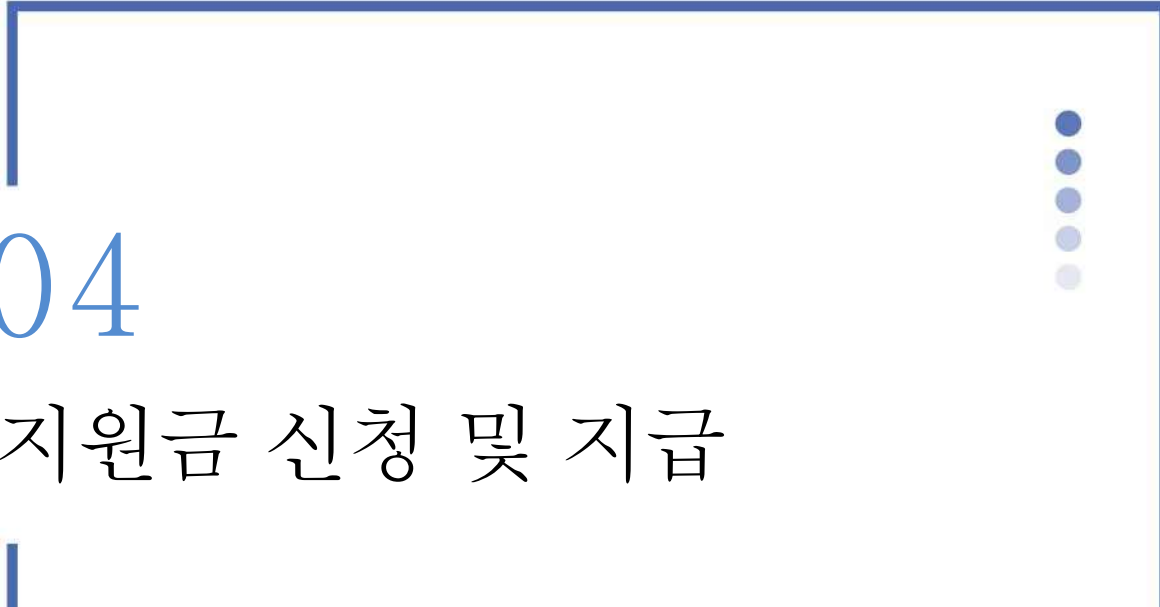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사업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참여근로자 포함)를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발생 일부터 참여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 중단 및 약정 해지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이 제한됨



0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 신청주기와 신청범위

- 신청기간 : 매달 15일(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신청금액 :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예천지점 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 신청방법 :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참여근로자에 대해서, 매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업 참여기업이 임금을 선(先)지급한 후, 전월분 지원금을 당월 15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에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 단, 이 경우 사업 종료 직후 전체 급여 증빙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① [서식 8] 지원금 지급 신청서
- ② [서식 9] 출근부 사본(원본대조필 필수) *자체 출근부 양식 첨부 가능
- ③ 급여명세서, 이체 확인증 등 급여입금 확인서(원본대조필 필수)
- ④ (해당항목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 ⑤ (해당항목만)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 ⑥ 당해사업 전용통장(예금주 명의로는 대표자를 명기) 사본
- ⑦ 사업 만족도 조사(기업 및 근로자) 각 1부

② 지원금 지급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달 혹은 신청한 달 익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지급제한)
 - 참여기업·참여근로자의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 기재, 작성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참여기업·참여근로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불응한 경우 지급을 중단·보류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③ 부정수급 방지 및 제재규정

1) 부정수급 방지 및 확인 절차

- (부정수급 방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가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조기에 파악·예방해야 함
- (조사 개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되거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자체 모니터링·내부감사·제보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포착된 경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함
- (자료 요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참여기업 또는 참여근로자에게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통장 이체내역 등)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 간주 또는 참여 제한 조치가 가능함
- (현장 확인) 필요 시 현장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근무여부, 임금 지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결과 통보)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경북도, 예천군은 상호협의하여 부정수급 금액, 환수 대상 기간, 제재 내용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근로자에게 통보

2) 환수 범위 및 제재

- (환수범위)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 (제재 조치) 추가 참여 제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또는 근로자)은 일정 기간(3년) 본 사업 및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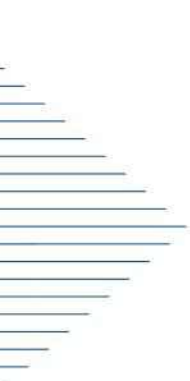
- (협약 해지)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협약(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 시 형사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음

3) 이의 제기 및 재심의

- (이의신청) 환수 또는 제재 처분을 통보받은 기업·근로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재심의 절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함.
- (최종 결정) 재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액, 제재 수준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름

4)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및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내부 규정에 따름

5) (협약 및 보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약정 해지 및 사후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상북도 및 예천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해지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와 사후 조치 사항을 경상북도 및 예천군에 지체 없이 보고함



05

기타 조치사항



① 돌봄서비스 연계

(1) 초기 상담

- (구직여성 상황 파악)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구직여성이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자녀 돌봄 현황과 필요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해야 함
- (우선 지원 필요성 확인) 상담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구직여성이 ‘오전·오후 특정 시간대’ 혹은 ‘방학 기간’ 등 집중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함

(2)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매칭

-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돌봄 정보 안내) 상담을 통해 파악된 구직여성의 돌봄 수요에 맞추어, 가까운 돌봄기관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지원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야 함
- (긴급 돌봄 대비) 갑작스러운 야근·주말근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예: K보듬 6000 등) 연락처 및 신청 방법을 사전에 제공함

(3) 돌봄 비용 및 지원 사업 안내

- (비용 부담 최소화) 돌봄기관 이용료,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 등 실제 돌봄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부지원 프로그램(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4) 사후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 (이용 현황)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근로가 시작된 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② 지역연계 및 협력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직여성에게 종합적·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돌봄서비스기관, 교육훈련기관, 지역사회 자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1) 지역 기업과의 연계 강화

- 기업 발굴 및 참여 확대
 -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력하여 단기 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을 상시 발굴·독려함
 - 기업과의 1:1 밀착 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본 사업(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의 혜택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함
- 인력 수요 조사와 정보 공유
 - 경북도, 예천은 매년 ‘단기·긴급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 명단과 직무 범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활용하도록 해야 함
-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율
 - 참여기업이 인력 매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인력 부족, 근로조건 협의 애로 등)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수시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필요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음
 - 기업 퇴사율이 높은 경우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근무환경 개선이나 돌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3)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추진

- 협조체계 구축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경력 단절 여성의 ‘육아·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구직여성 근무 일정에 맞춘 맞춤형 돌봄
 - 근로 시작 전, 운영기관이 필요시 구직여성 자녀의 돌봄 필요시간

을 파악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결함

4)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수립

○ 성과 모니터링 항목

- 참여 인원(구직자기업) 추이, 근속퇴사율, 돌봄 연계 실적, 지원금 지급 내역 등
- 구직여성 설문조사(근무 만족도, 돌봄서비스 만족도), 기업 설문조사(인력 만족도, 업무 성과) 실시

○ 우수 사례 확산 및 후속조치

- 매칭 성공률이 높거나 돌봄서비스 활용도가 높은 기업·구직자 사례를 발굴 홍보해 사업홍보 및 확산에 주력해야 함
- 문제가 반복되는 영역(예: 임금체불, 근로시간 분쟁, 돌봄 공백 등)에 대해서는 지침 수정이나 추가 예산 확보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③ 정기 실적 보고

- (정기보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매월 초(예: 매월 5일까지) 혹은 비정기 요청에 따라 전월까지 누적실적을 예천군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 보고내용 :

1) 참여 현황 및 실적

- 구인기업(신규 신청 기업 수, 누적 기업 수)
- 근로자(신규 참여자 수, 누적 참여자 수)
- 신규 약정 체결 건수, 근로계약 체결 건수
- 현재 근무(유지) 인원, 이탈/중도포기 인원, 완주율 등

2)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 해당 월 지원금 신청 기업/건수, 해당 월 지급 완료 건수/금액
- 전월 대비 변경 사항(누적액 포함)

3) 기타 특이사항

- 기업별 주요 이슈(고충 사항, 애로사항), 근무환경, 중도해지·분쟁 발생 여부 및 조치 사항 등